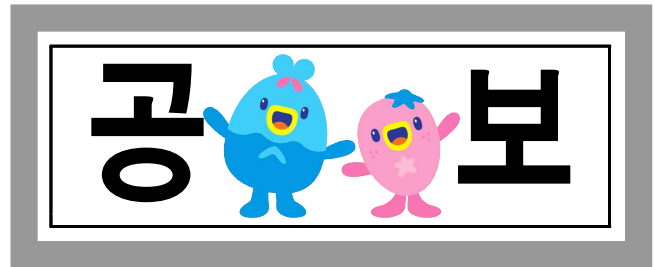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515호 2024년 2월 8일(목)

조 례

- 속초시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 운영 조례 2
- 속초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 5

규 칙

- 속초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7

입법예고

- 속초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8

발행 : 시 민 소 통 담 당 관 (전화 : 639-3750, FAX : 639-2799)

속초시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2월 8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82호

속초시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과 시민의 시내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속초시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속초시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란 속초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내버스 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제보 등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역할) 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버스 불편사항 발굴 및 제보
2.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문 및 현지조사
3. 시내버스 노선조정 시 의견수렴
4. 친절운전기사 발굴
5. 그 밖에 시내버스 정책 홍보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

② 모니터단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및 위촉) ① 모니터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단을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촉된 단원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모니터단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임기) ①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해촉 등 모니터단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단원을 해

촉할 수 있다.

1. 모니터단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2. 모니터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전출 등으로 속초 시내 소재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4. 모니터단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5.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거짓 사실을 모니터링 했을 경우
6.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운영 활동) ① 모니터단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전자우편, 서면을 활용하여 제보 또는 건의한다.

② 그 밖에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실비보상)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활동 및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단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2월 8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83호

속초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속초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이하 “맨발”이라 한다)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 나. 등산로, 탐방로, 숲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2월 8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1562호

속초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속초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설·추석 명절 일직

제6조제2항제1호가목 중 “(담당관,과장급)”을 “(담당관·과장급)”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담당주사급)”을 “(팀장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연휴 외의”를 “그 외의”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담당주사급)”을 “(팀장급)”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2명”을 “숙직 1명, 일직 2명”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5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우리시 주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안전 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임기, 교육, 대표단 구성(안 제3조 ~ 제5조)
- 다.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지원(안 제6조 ~ 제7조)
- 라.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표창(안 제8조 ~ 제9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재난대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재난대응과(재난대응팀)
- 2) 연락처 : 전화 033-639-2757, FAX 033-639-2588
- 3) 전자문서 : ehddnr525@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재난대응과 재난대응팀(033-639-27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속초시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속초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시장은 시의 원활한 안전문화활동 추진을 위하여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선출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안전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및 실시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주민등록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